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5. 5. 28.> (앞 쪽)

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·선박연료공급업·선박수리업·컨테이너수리업)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 6일
신청인	①상 호(명 칭)			
	②대 표 자(성 명)		③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④주 소	(전화번호:)		
⑤사 업 의 종 류				
⑥자 본 금				
⑦항 만 명(사 업 구 역)				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·선박연료공급업·선박수리업·컨테이너수리업)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구비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	수 수 료
	1. 사업계획서 1부 2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3.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.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(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) 1부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입인지 1만원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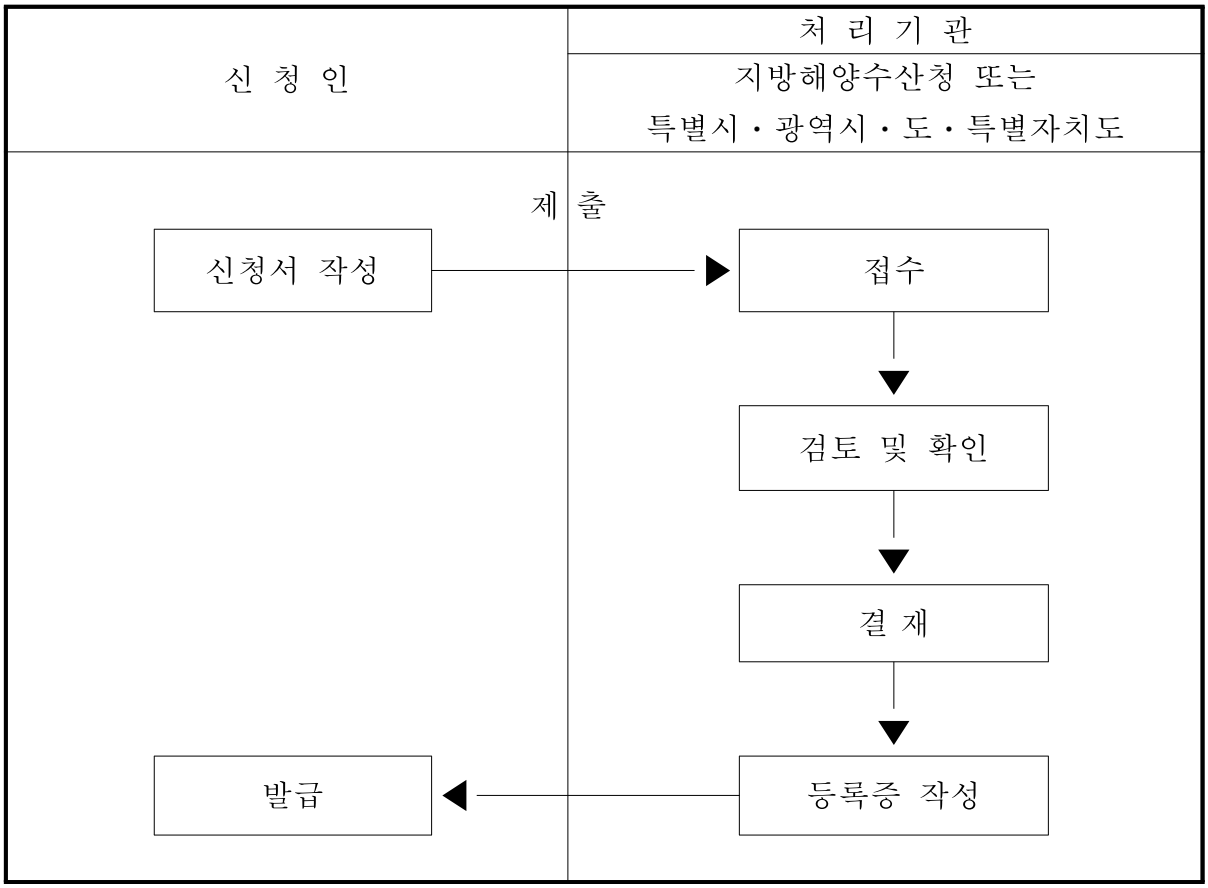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